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5
----------	-----

발의년월일 : 2016년 1월 28일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 진두생, 주찬식, 김동승, 김진수,
이상목, 박성숙, 이복근, 우미경,
박중화, 송재형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신고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경영하는 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제2호중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사람”으로, 제3호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2호중 “국민이 아닌 자”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신고한 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를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제3항중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을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으로, “신고인에 대하여”를 “신고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신고하는 사람</u>----- ----- ----- -----.</p>
<p>제2조(정의) (생략)</p> <p>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u>경영하는 자</u></p> <p>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u>등록을 한 자</u></p> <p>3. 운수종사자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u>종사하는 자</u></p> <p>4~11 (생략)</p> <p>12. 외국인 관광객 :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u>국민이 아닌 자</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운수사업자 : ----- ----- ----- <u>경영하는 사람</u></p> <p>2. 운송사업자 : ----- ----- <u>등록을 한 사람</u></p> <p>3. 운수종사자 : ----- ----- <u>종사하는 사람</u></p> <p>4~11 (현행과 같음)</p> <p>12. 외국인 관광객 : ----- ----- <u>국민이 아닌 사람</u></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p> <p>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u>신고한 자</u>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p> <p>① ----- ----- ----- ----- ----- <u>신고한 사람</u>----- -----</p>

<p>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1~11 (생략)</p> <p>② (생략)</p>	<p>----- ----- ----- -----.</p> <p>1~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p> <p>① (생략)</p> <p>1~3 (생략)</p> <p>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u>지급 받고자 하는 자</u>는 시장에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p> <p>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u> ----- ----- ----- -.</p>
<p>제7조(신고인의 보호)</p> <p>① 시장은 <u>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u>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u>신고 대상이 되는 자</u>는 이를 신고한 <u>신고인에 대하여</u>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신고인의 보호)</p> <p>① ----- <u>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u> ----- ---- <u>신고인에게</u> ----- -----.</p>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것임으로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남창진